



2021년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2. 3. 4.

대표이사 피터 정

A blue ink signature, likely of Peter Jung, is written next to the name '대표이사 피터 정'.



【목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4
1. 지배구조 일반	4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4
나. 지배구조 현황.....	5
다. 관련 규정.....	8
2. 이사회	9
가. 역할(권한과 책임)	9
나. 구성(이사)	12
다. 활동내역	15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21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2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3
가. 역할(권한과 책임)	23
나. 구성	23
다. 선임기준	24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5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25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25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39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40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41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45
바. 사외이사 평가.....	45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47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48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50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0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52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52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52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53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54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54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55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55
6. 감사위원회	55
가. 역할(권한과 책무)	55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5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59
라. 감사보조조직 등	64
7. 위험관리위원회	65
가. 역할(권한과 책무)	65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6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68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71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72
1. 보수위원회	72
2. 보수체계	79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및 계약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결과의 공개를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과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각각 수립,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과 각종 행정지침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1년말 현재, 전체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3명(60%)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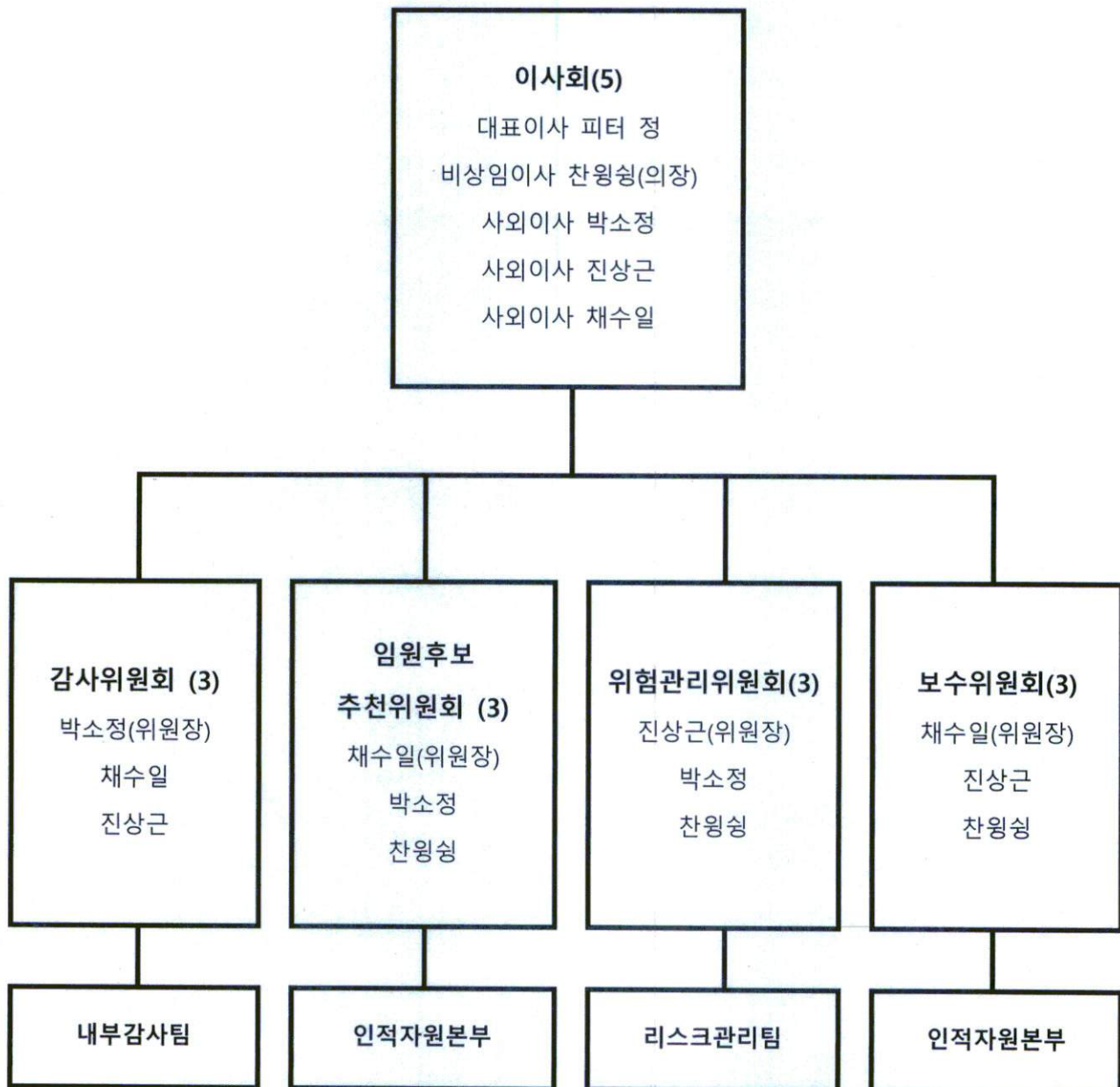
또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각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공시 및 수시공시 등 각종 경영 공시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mypage.aia.co.kr/AIAHomepage/disclosure/management-information/regular.do>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계획 달성, 기업 의무와 법규 준수 등 회사의 지속적인 성과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사외이사 3명(60%)을 포함하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수 및 경력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내 규정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영활동을 감사, 진단, 평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수립, 리스크에 기초한 주요전략 승인, 리스크 관리 지표 설정 및 리스크 관리 목표 및 한도의 승인 등 리스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리더십과 전략적 역량, 경영 역량 등을 겸비한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회사의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 및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구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 평가합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상임/사외/비 상임)	관련 규정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외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 에 관한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 운영	3/5	찬왕승 (비상임)	정관 30조~34조,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대표이사 후보 추천	2/3	채수일(사외)	정관 제34조의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의 적정성과 경영성과 평 가 및 개선	3/3	박소정(사외)	정관 제34조의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6조, 감사위원회규정
위험관리위원회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의 수립·검토 및 위험관리 주요사항 심의·의결	2/3	진상근(사외)	정관 제34조의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7조,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보수위원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으로 보수정책 수립 및 보수제도 운영	2/3	채수일(사외)	정관 제34조의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8조, 보수위원회 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 규정
- 첨부3.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4.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5.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 첨부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7. 보수위원회 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올바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는 상법, 지배구조법, 정관,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회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회사를 운영합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하며(이사회규정 2.2.1.)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4.1.).

이에 당사는 '22년 2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경영전략 및 목표)을 발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대표이사는 매 분기 정기 이사회에서 경영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며(2021 회계연도에는 3월, 6월, 9월 및 12월), 이는 이사회에서 경영목표, 전략수립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정관 제30조), 이사회규정 2.10.,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2021년에는 정관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상법 제388조, 상법 제44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3호, 정관 제30조 제3항).

이에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22.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22. 2월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산안 및 재무제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아 래 -

*2021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결('22. 2월)

- 당기순이익: 약 1,758억원
- 총 자 산: 약 180,263억 원

또한 예산은 경영전략 및 목표와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은 '2022년 경영목표 및 전략'과 함께 2022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 아 래 -

*2022년 예산편성('22. 2월)

- 고정비: 약 2,507억 원
- 변동비: 약 2,909억 원
- 합계: 약 5,417억 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회사의 자본구조의 중요한 변경, 기타 회사 기업 구조의 중요한 변경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이사회 규정 2.2.).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지배구조법 제24조에 의하여 법령의 준수, 자산운용의 건전성 유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행동규범, 내부통제체계,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준수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위험관리 관련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체계,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산하 전담 조직의 운영 또는 조직 별 준법보안 담당자 지정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그 위반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연 1회 이상 내부통제 자율규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경영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관리, 평가,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1 내지 36조).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당사 이사회는 상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포함) 등과 회사간의 거래관련, 경업금지 관련,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관련 승인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2.9, 5.2).

2020 회계연도에 개최된 이사회에는 위 거래와 관련한 안건이 부의 된 바 없습니다.

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내부규정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및 내부지침, 이사회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 기타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을 승인하며,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사회 규정 2.10.)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는 이사회의 총원수를 3인이상, 사외이사의 수는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라 회사의 자산규모, 보험업의 특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중요사항들을 적절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이사수의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24조).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총 5인으로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 1인, 비상임이사 1인 및 사외이사 3인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및 사외이사 모두 3년이내이고 연임은 가능하지만,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재임기간이 6년으로 제한됩니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정관 제26조).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 구성원

① 대표이사 피터 정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피터 정은 회사 정관에 따라 2019. 12. 9.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어 임기 3년에 2020. 1. 1. 을 임기시작일로하여 당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현직 취임 전에는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사장과 AIA Group Limited(HongKong)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② 이사회 의장 및 비상임이사 찬왕성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찬왕성 비상임이사는 3년 임기를 부여받고 2020. 3. 13. 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현재 AIA 그룹 현지 최고 경영자(Regional Chief Executive)로 활동하고 있으며, AIA홍콩/마카오 최고경영자(CEO), AIA 중국 지역장(Country Head)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③ 사외이사 진상근



사외이사 진상근은 3년 임기를 부여받고 2019. 3. 29. 당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이사, 우리카드 상근감사위원, 서민금융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진상근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보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④ 사외이사 박소정

사외이사 박소정은 3년 임기를 부여받고 2020. 3. 31. 당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캐롯 손해보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박소정은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⑤ 사외이사 채수일

사외이사 채수일은 3년 임기를 부여받고 2019. 3. 29. 당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보스턴컨설팅 그룹 한국사무소 상임고문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채수일은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요약

[2021.12.31기준]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피터 정	상임	대표이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사장, AIA Group Limited	'20.1.1	'22.12.31	24개월	-



			(HongKong)부사장				
찬영성	비상임	이사회 의장	AIA 그룹 현지최고 경영자(Regional Chief Executive) AIA홍콩/마카오 최고경영자(CEO), AIA중국지역장(Country Head)	'20.3.13	'23.3.12	22개월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진상근	사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이사, 우리카드 상근감사위원, 서민금융진흥원 비상임이사	'19.3.29	'22.정기주주총회 일	33개월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채수일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대표, 보스턴컨설팅 그룹 한국사무소 상임고문, DOAI (도에이아이) Chief Strategy Officer	'19.3.29	'22.정기주주총회 일	33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박소정		감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캐롯손해보험(주) 사외이사	'20.3.31	'23정기주주총회 일	22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도에는 총 5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재적이사의 100%가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소집통지 및 안건자료 제공을 이행하여, 이사들이 안건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이사회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사회에서는 부의 된 의결안건은 29건으로 모두 가결되었으며, 보고안건 역시 모두 계획대로 처리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2021. 2. 15. 오후 5:00~6:00

[안건 통지일: 2021. 2. 5.]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원싱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0년도 4분기 이사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0년도 재무제표, 영업 보고서 검토 및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다. 보수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나) 제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2021. 3. 15. 오후 5:00~6:00

[안건 통지일: 2021. 3. 5.]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왕싱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년도 계약자배당제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0년 정보보호 상시평 가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 력 평가)시행 연기 승인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준법 관련 그룹 사규 채택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본점 주소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20년도 잉여금처분(결산배당, 이익준비금 적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건 보고의 건
나. 소비자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
다. 202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의 건
라. 2020년 내부통제실태점검 결과 보고의 건
마. 자금세탁방지 업무 연간 보고의 건
바. 2020년도 4분기 경영(실적) 성과 보고의 건
사.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 실적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보고의 건
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의 건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차.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카.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다) 제21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2021. 6. 16. 오전 11:00~12:00

[안건 통지일: 2021. 6. 8.]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윙싱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1분기 이사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규 제개정 승인의 건 - Group Tax Policy의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승인(증액)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일반계정의 Asset Mandate개정에 대한 승 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소비자보호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						
나.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						
다. 2021년도 1분기 경영(실적) 성과 보고의 건						
라.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마.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라) 제2021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2021. 9. 8. 오후 5:00~6:00

[안건 통지일: 2021. 8. 31.]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윙싱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2분기 이사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제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소비자보호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						
나. 2021년도 2분기 경영(실적) 성과 보고의 건						
다.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라. 보수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마.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마) 제2021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2021. 12. 3. 오후 5:40~6:30

[안건 통지일: 2021. 11. 25.]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찬윙싱	피터 정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 3분기 이사회 의 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ORSA 시행 연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의 Asset Mandate 개정에 대 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1년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사규 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보험금 심의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							
나. 2021년도 3분기 경영(실적) 성과 보고의 건							
다. Director's Handbook 업데이트 사항 보고의 건							
라.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마.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을 두고 이사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년 초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구성, 운영 등이고,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 구성원 및 지원 담당 임직원에게 대한 서면(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2021년도에 대한 이사회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대체로 우수합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경우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공정성, 전문성, 충실성과 같은 평가항목에 대해 매년 본인 평가 및 이사간 상호평가, 임직원의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차보고서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의 '바. 사외이사 평가' 부분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고(지배구조법 제13조, 이사회규정 3.1 및 3.3), 이 경우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실 및 관련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찬왕성 비상임이사를 2021년 3월 15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회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진상근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9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등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와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그리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2명을 포함한 총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상 3인이상의 이사를 위원으로 하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임이사 1명과 사외이사2명으로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이 67%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채수일	사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19.3.29.	'22.정기주 주총회일
박소정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3.26.	'23.정기주 주총회일
찬윙싱	비상임	이사회 의장,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위원	'20.3.13.	'23.3.12.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리더십 등을 갖춘 후보자를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에 후보로 보고되며, 추천된 후보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면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절차가 완료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021년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개최된 바 없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 제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2021. 2. 15. 오후 5:00~6: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원승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0년도 4분기 이사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사록 승인의 건						
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0년도 재무제표, 영업 보고서 검토 및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다. 보수위원회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2021. 3. 15. 오후 5:00~6: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영성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년도 계약자배당제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0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시행 연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준법 관련 그룹 사규 채택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본점 주소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20년도 잉여금처분(결산배당, 이익준비금 적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건 보고의 건
나. 소비자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
다. 202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의 건
라. 2020년 내부통제실태점검 결과 보고의 건
마. 자금세탁방지 업무 연간 보고의 건
바. 2020년도 4분기 경영(실적) 성과 보고의 건
사.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 실적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보고의 건
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의 건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차.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카.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 제21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2021. 6. 16. 오전 11:00~12: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윙싱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1분기 이사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규 제·개정 승인의 건 - Group Tax Policy의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승인(증액)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일반계정의 Asset Mandate개정에 대한 승 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소비자보호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						
나.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						
다. 2021년도 1분기 경영(실적) 성과 보고의 건						
라.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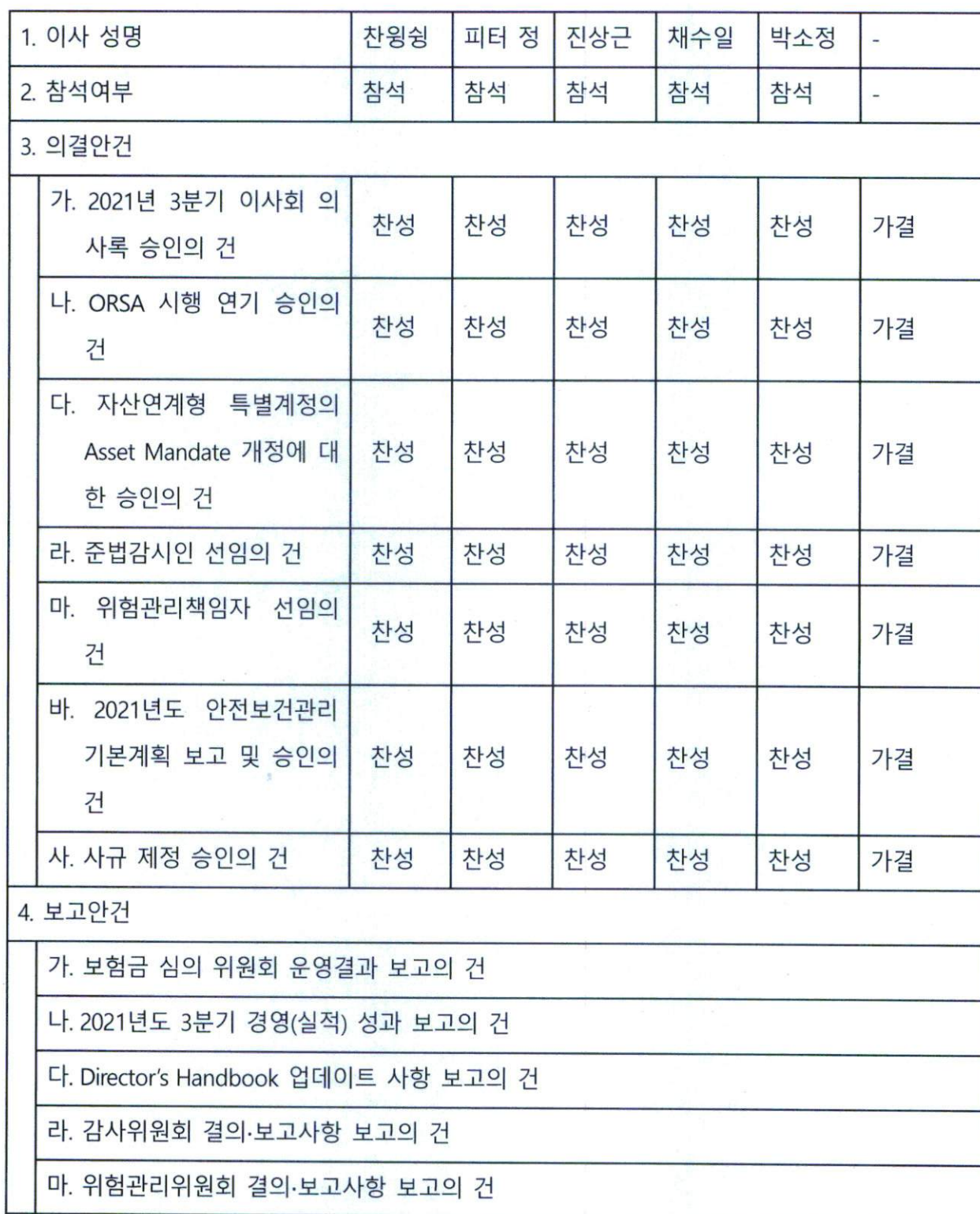
마.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2021. 9. 8. 오후 5:00~6: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피터 정	찬왕싱	진상근	채수일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2분기 이사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제 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 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소비자보호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						
나. 2021년도 2분기 경영(실적) 성과 보고의 건						
다. 감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라. 보수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마.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보고사항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2021. 12. 3. 오후 5:40~6:3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년도 개최이력 없음

다) 감사위원회

- 제2021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21. 2. 15. 오후 2:30~4: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1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의 건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다. 2020년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라. 그룹 내부감사현장 개정 보고의 건				
	마. 내부감사 인력운용 및 효율성 검토에				
	바. 내부감사본부와의 개별미팅				
	사.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의 건				

- 제2021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21. 3. 15. 오후 2:10~3: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의 건				
	나. 2020회계년도 감사된 재무제표 보고의 건				
	다. 2020년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라.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마. 감사위원회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 건				
	바.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의 건				
	사. 2021년 외부감사 보수 보고의 건				
	아. 2020년 4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자. 2020년 4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차. 2020년 4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카. 연간 세무 업데이트				
	타. 2020년 4분기 준법사항 보고의 건				
	파. 2020년 4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하. 외부감사인과의 개별미팅				
	가.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				



▪ 제2021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21. 6. 16. 오전 9:00~10: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 3월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					
나. 외부감사인 평가에 관한 사항					
다. 2021년 1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라. 2021년 1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마. 2021년 1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바. 2021년 1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사. 2021년 1분기 준법 사항 보고의 건					
아. 2021년 1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자.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					

▪ 제2021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21. 9. 8. 오후 2:00~3:3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				
나. 2021년 2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다. 2021년 2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라. 2021년 2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마. 2021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의 건				
바. 2021년 2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사. 2021년 2분기 준법사항 보고의 건				
아. 2021년 2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자.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의 건				

▪ 제2021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21. 12. 3. 오후 2:10~3:4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 9월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 건임의 건 (2022년~2024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				
	나. 2021년 3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다. 2021년 3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라. 2021년 3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마. 외부감사인 독립성, 객관성 및 효과성 검토에 대한 보고의 건				
	바. 2021년 3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사. 2021년 3분기 준법사항 보고의 건				
	아. 2021년 3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자.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				
	차. 외부감사인과의 개별회의				
	카. 내부감사팀과의 개별회의				

라) 위험관리위원회

■ 제2021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3. 15. 오후 4:00~5: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왕승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0년도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	찬성	-	찬성	가결



	록 승인의 건				
	나. 위험관리 보완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재보험 내부통제 점검결과 보고의 건				
	나. 위험 허용도 보고의 건				
	다.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라.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6. 16. 오전 10:10~10: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왕성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IFRS17 보고의 건				
	나. 위험허용도 보고의 건				
	다.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라.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마. RBC기준 변경의 영향 보고의 건				
	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영향 분석 보고의 건				
	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보고의 건				
	아. 중국 화룽 채권 현황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9. 8. 오후 3:50~4: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윙싱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 록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 보완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보고의 건				
	나. 위험허용도 보고의 건				
	다.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라.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12. 3. 오후 3:50~4: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윙싱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 록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파생금융거래 전략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 보완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위험허용도 보고의 건				
나.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다.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라. 중국 화룽 채권 현황 보고의 건				

마) 보수위원회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보수위원회 라. 보수위원회 활동 내역 및 평가 3) 회의개최 내역' 참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채수일

사외이사 채수일은 2021년도에 개최된 5차례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총 7차례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활발하고 충실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진상근

사외이사 진상근은 2021년도에 개최된 5차례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총 11차례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활발하고 충실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박소정

사외이사 박소정은 2021년도에 개최된 5차례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총 9차례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활발하고 충실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기 사외이사 전원은 사전에 제공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라) 요약

구분 사외 이사 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시간 ¹⁾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 위원회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실적/ 목 표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진상근	5	5	5	5	4	4	2	2	-	-	16/16
채수일	5	5	5	5	-	-	2	2	-	-	12/12
박소정	5	5	5	5	4	4	-	-	-	-	14/14

주1) 활동시간: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연간 개최횟수를 근거로 산정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보험명	보험기간	중개보험업체	보험사
임원배상책임보험	2021.10.31.~2022.10.30.	MARSH	ACE American Fir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	--	--	---

* 보상위험: 임원이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

* 보상 한도액: 1사고당 USD 10,000,000/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 USD 10,000,000

* 본 Corporate insurance는 HK Group 주관 program의 일환으로 그룹에서 계약한 보험사 및 보험중개사를 통해 진행.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자금세탁방지 교육 - 일시: 2021. 4. 15 ~ 2021. 4. 30 (온라인 교육) - 내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근거,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설계 및 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고,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제공함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자유이수(완료)	자유이수(완료)	자유이수(완료)
교육시간	약 60분	약 60분	약 60분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진상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관련 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평가: 사외이사 진상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적극적 자격요건인 금융회사의 이사로
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책임성, 공정성, 독립성, 충실성 요건
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진상근은 동 항목을 선임 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 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 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이사, (주)우리카드 상근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겸비함
나. 윤리책임성	충족	공직자 출신으로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함
다.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문제가 없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가능함
라. 독립성	충족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 및 책임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 결정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함
라. 충실성	충족	2021년도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고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

2) 사외이사 박소정

가) 소극적 자격요건

*관련 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평가: 사외이사 박소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적극적 자격요건인 금융회사의 이사로

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책임성, 공정성, 독립성, 충실성 요건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박소정은 동 항목을 선임 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회계/재무분야 전문가로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겸비함
나. 윤리책임성	충족	학자로서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함
다.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문제가 없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가능함
라. 독립성	충족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 및 책임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 결정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함
라. 충실성	충족	2021년도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이사회는 물론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



		애함.
--	--	-----

3) 사외이사 채수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관련 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평가: 사외이사 채수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적극적 자격요건인 금융회사의 이사로
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책임성, 공정성, 독립성, 충실성 요건
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채수일은 동 항목을 선임 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 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 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전략, 금융 등의 컨설팅 전문가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겸비함
나. 윤리책임성	충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함
다.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문제가 없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가능함
라. 독립성	충족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 및 책임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 결정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함
리. 충실성	충족	2021년도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내·외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6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 상호간의 평가와 관련 임직원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집니다.

② **평가 기준:**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 공정성, 전문성, 충실성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별 세부항목에 대한 5단계 평가등급(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에 따른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구술평가 등의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21년도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공정성, 전문성, 충실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진상근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박소정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채수일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3) 외부평가

당해 년도에 별도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인 찬왕성 이사가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진상근 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

당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인 법무지원본부는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공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진상근

가) 재직기간

33개월(2021. 12. 31. 기준)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0만원	
	기본금	6,000만원	월500만원 X 12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80만원	명절선물(설40만원, 추석40만원)

2) 사외이사 박소정

가) 재직기간

21개월(2021. 12. 31. 기준)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0만원	
	기본금	6,000만원	월500만원 X 12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80만원	명절선물(설40만원, 추석40만원)

3) 사외이사 채수일

가) 재직기간

33개월(2021. 12. 31. 기준)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0만원	
	기본금	6,000만원	월500만원 X 12개월
	상여금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80만원	명절선물(설40만원, 추석40만원)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당사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 일	임기 만료 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박재식	'17. 12.1.	'20. 12.1.	16개월 (193.29. 사임)	감사위원회 (17.12월~) 보수위원회 (17.12월~) 위험관리위원 회 (17.12월~)	위험관리위원 회 위원장	(주)KB국민카드 사외이사(17.4~) 한국증권금융 사장 (12.12~15.12)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2.2~12.12)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11.4~12.1)
이봉주	'17. 12.1.	'20. 12.1.	28개월 (203.26. 사임)	감사위원회 (17.12월~) 위험관리위원 회 (17.12월~) 임원추보추천 위원회 (17.12월~)	감사위원회위 원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94.9~)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90.5~94.7)
써니 이	'17. 12.1.	'20. 12.1.	16개월 (193.29. 사임)	감사위원회 (17.12월~) 보수위원회 (17.12월~) 임원추보추천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Accion 설립자 겸 이사(17.5~) Bain & Company 선임이사 (00~20) EDS & AT Kearney 컨설턴트 등 (91~00)

				위원회(17.12월~)		
진상근	'19.2.29.	'22. 정기 주주 총회 일	21개월	감사위원회 (19.6월~) 보수위원회 (19.6월~) 위험관리위원회 (19.6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19.6월~)	▶2016~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비상임이사 ▶2017~2018: NH아문디자인자산운용(주) 사외이사 ▶2013~2016(주)우리카드 상근 감사위원
채수일	'19.2.29.	'22. 정기 주주 총회 일	21개월	감사위원회 (19.6월~) 보수위원회 (19.6월~) 임원추보추천위원회 (19.6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19.6월~)	▶2019~현재: DOAI Chief Strategy Officer ▶2017~현재: 보스턴컨설팅 상임고문 ▶2002~2017: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대표
박소정	'20.3.31.	'23. 정기 주주 총회 일	9개월	감사위원회 (20.3월~) 위험관리위원회 (20.3월~) 임원추보추천위원회 (20.3월~)	감사위원회 위원장 (20.3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캐롯손해보험(주) 사외이사

※ '21. 12월말 기준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내용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자격검증 및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경영승계 절차 등입니다.

<붙임>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4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발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방법으로는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 승계절차가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빠른 시일 내에 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고,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에 위한 안건으로 부의합니다. 정관에 의해 최고경영자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 사유, 개시일자,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고,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의거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2021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4조에 따른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2021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2021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은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2021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후보군 현황

2021년도 해당사항 없으며 향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인적자원본부이며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관련한 실무직원은 2명입니다. 인적자원본부의 실무직원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를 포함한 임원선임 관련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현황

일자	운영내역	비 고
-	2021년 중 운영내역 없음	-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뿐 아니라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성이 검증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경영현안 및 전반적인 내부통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한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 경영 등에 대한 내부감사계획의 수립과 집행, 결과 평가와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감사본부장에게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내부감사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의결로 위임한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감사위원회 규정 제25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외감법 제10조 제4항).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1년 12월에 삼일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계법인 입찰 단계부터 제안서 평가 및 삼일회계법인과의 대면회의를 거쳐 회계법인의 독립성, 전문성, 신임도 등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내부감사팀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팀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감사팀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부감사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팀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1조 제3항)

-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내부감사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의결로 위임한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등을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사전 일상감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예방 및 점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등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면 감사위원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3조)

이에 당사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소정	사외	위원장	'20.3.31.	'23. 정기주주총회일
채수일	사외	감사위원	'19.3.29.	'22. 정기주주총회일
진상근	사외	감사위원	'19.3.29.	'22. 정기주주총



				회일
--	--	--	--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정기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및 제9조)

2021년에는 총 5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결의 안건은 9건, 보고안건은 51건이었습니다.

2021년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율은 100%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2021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21. 2. 15. 오후 2:30~4: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1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의 건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다. 2020년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라. 그룹 내부감사현장 개정 보고의 건
마. 내부감사 인력운용 및 효율성 검토에
바. 내부감사본부와의 개별미팅
사.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의 건

▪ 제2021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21. 3. 15. 오후 2:10~3: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의 건				
나. 2020회계년도 감사된 재무제표 보고의 건				
다. 2020년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라.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마. 감사위원회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 건				
바.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의 건				
사. 2021년 외부감사 보수 보고의 건				



아. 2020년 4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자. 2020년 4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차. 2020년 4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카. 연간 세무 업데이트
타. 2020년 4분기 준법사항 보고의 건
파. 2020년 4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하. 외부감사인과의 개별미팅
가.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

▪ 제2021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21. 6. 16. 오전 9:00~10: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 3월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				
나. 외부감사인 평가에 관한 사항				
다. 2021년 1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라. 2021년 1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마. 2021년 1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바. 2021년 1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사. 2021년 1분기 준법 사항 보고의 건
아. 2021년 1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자.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

■ 제2021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21. 9. 8. 오후 2:00~3:3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				
나. 2021년 2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다. 2021년 2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라. 2021년 2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마. 2021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의 건				
바. 2021년 2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사. 2021년 2분기 준법사항 보고의 건				
아. 2021년 2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자.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의 건				



■ 제2021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21. 12. 3. 오후 2:10~3:4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소정	진상근	채수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 9월 감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 건임의 건 (2022년~2024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직전 감사위원회 추가 확인 사항					
나. 2021년 3분기 재무성과 보고의 건					
다. 2021년 3분기 재무 관련 사항 보고의 건					
라. 2021년 3분기 외부감사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감사 이외 서비스 제공의 건					
- 외부감사인 임직원 채용의 건					
마. 외부감사인 독립성, 객관성 및 효과성 검토에 대한 보고의 건					
바. 2021년 3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사. 2021년 3분기 준법사항 보고의 건					
아. 2021년 3분기 주요 소송 사항 보고의 건					
자. 그룹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					
차. 외부감사인과의 개별회의					
카. 내부감사팀과의 개별회의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을 두고 해당 위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구성, 운영 등의 항목이고, 세부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의결안건의 적절성,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여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2021년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감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업무 전문가이자 보험 업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내부감사팀장과 3명의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팀장은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감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내부감사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의 수행을 보조합니다.

*내부감사팀 활동 내역(2021년)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1.2.15	감사위원회	- 그룹 내부감사헌장 개정 보고 - 2020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 2020년 내부감사 인력운용 및 효율성 검토 보고 - 2021년 내부감사계획 보고 및 승인 요청
2021.3.15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원 - 감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지원 - 감사위원회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2021.6.16	감사위원회	- 그룹 내부감사헌장 개정 보고 - 2021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1.9.8	감사위원회	- 2021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1.12.3	감사위원회	- 2021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 2022년 내부감사계획 보고 및 승인 요청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감독하고, 위험관리측정 시스템 및 기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 관련 사안에 관하여 또는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 이사회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의 위험관리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및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여 회사가치를 극대화하며, 사업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험 관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기본원칙, 위험관리 조직, 위험관리 체계 및 절차, 위험선호도 등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장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유형을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용 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각 리스크 유형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부담가능한 위험수준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리스크 유형별 세부 기준은 위험관리 보완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신용등급/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 보완지침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 보완지침은 금융여건의 변화 또는 제도 개정 등에 맞춰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이외에도 회사는 지급여력비율 등 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들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 포함 3명(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67%입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진상근	사외	위원장	'19.3.29	'22. 정기주주총 회일
박소정	사외	위원	'20.3.26.	'23. 정기주주총 회일
찬왕성	비상임	이사회 의장	'20.3.13.	'23.3.1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에는 4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결의안건은 8건, 보고안건은 20건이었습니다.

2021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률은 67%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2021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3. 15. 오후 4:00~5:0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왕성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0년도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 보완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재보험 내부통제 점검결과 보고의 건				
	나. 위험 허용도 보고의 건				
	다.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라.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6. 16. 오전 10:10~10: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윙싱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 록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IFRS17 보고의 건				
나. 위험허용도 보고의 건				
다.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라.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마. RBC기준 변경의 영향 보고의 건				
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영향 분석 보고의 건				
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보고의 건				
아. 중국 화룽 채권 현황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9. 8. 오후 3:50~4: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윙싱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 록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 보완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보고의 건				
	나. 위험허용도 보고의 건				
	다.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라.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 제2021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 12. 3. 오후 3:50~4:50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상근	찬왕성	박소정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의결안건					
	가. 2021년도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사 록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파생금융거래 전략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 보완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위험허용도 보고의 건				
	나. 자본건전성 보고의 건				
	다. 위기상황 분석 보고의 건				
	라. 중국 화룽 채권 현황 보고의 건				



3) 평가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가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을 두고 해당 위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구성, 운영 등의 항목이고, 세부적으로는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2021년도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의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2021년도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치 요구사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회사 및 개인의 성과가 개인의 보상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을 구현하는 보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구조화하고 통제함으로써 당사의 보수체계가 회사의 건전성과 영속성 유지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을 보수체계 운영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4조의2, 이사회규정 제2조 제11항을 근거로 2017년 12월부터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 규정”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원이 제기한 우려사항이나 반대 의견 등 보수위원회가 고려한 사항과 결정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달리 제약을 받지 않는 한 보수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이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3인(사외이사 채수일, 사외이사 진상근, 비상임이사 찬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원장으로서는 사외이사인 채수일 이사가 선임되어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중 진상근 이사는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금융 분야에서의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찬왕싱 이사는 오랜 기간 다국적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한 보험산업의 글로벌 전문가입니다. 진상근 이사와 찬왕싱 이사는 현재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당사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주요이력
채수일	위원	사외이사	-	현) DOAI Chief Strategy Officer 현) 보스턴컨설팅 상임고문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대표
진상근	위원	사외이사	有	현) 서민금융진흥원 비상임이사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찬왕싱	위원	비상임이사	有	현) AIA 지역총괄 CEO 전) AIA 홍콩 & 마카오 CEO

2) 구성원

성명	직위	상임/사외/비상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채수일	위원장	사외이사	2019-03-29	2022년 정기 주주총회일
진상근	위원	사외이사	2019-03-29	2022년 정기 주주총회일
찬왕싱	위원	비상임이사	2020-03-13	2023-03-12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보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위원은 보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에 대한 개인의 재무적 이해관계 및 타 법인의 이사직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에 대해 보수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1년에는 성과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 외에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련하여서만 별도로 심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2월 16일에 개최된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2021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현재 제출하는 작성 내용으로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정기 주주총회일 20일이전부터 당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1년에는 성과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 외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련하여서만 별도로 심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2021년에는 성과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 외에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만 별도로 심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그리고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2021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독립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회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 ② 해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의 보수위원회규정 제13조에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없으므로 2021년에 이에 대한 지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업무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이 없으므로 2021년에 이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의 지정이 없었습니다.

10) 임원퇴직금규정 및 성과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지배구조법 취지에 맞게 임원관리기준이 제정되면서 2021년부터 임원의 범위가 기존 이사, 상무와 같은 호칭기준에서 경영위원회 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와 같이 실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직책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 2월 15일에 개최된 제1회 보수위원회는 임원의 성과보수규정과 퇴직금규정에서의 임원의 정의를 임원관리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11) 임원 성과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1년 9월 8일에 개최된 제2회 보수위원회는 2021년 9월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일치하도록 임원 성과보수규정의 임원의 범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추가하는 것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대상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추가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 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채수일)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전(또는 보수위원이 달리 합의한 기간)에 보수위원회 전원에게 통지되고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또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1년 결의사항 중 별도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1년에는 총 2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67%이며 사외이사의 경우 총 2회의 보수위원회 모두 100% 출석하였습니다.

3) 회의개최 내역

가) 제2021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 2021년 2월 15일 오후 4시 10분~오후 4시 40분

[안건 통지일: 2021년 2월 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채수일	진상근	찬왕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¹⁾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검토 및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가결
나. 임원 보수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및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가결

주1) 일신상의 사유



나) 제2021년도 제2회 보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오후 3시 40분~오후 3시 50분

[안건 통지일: 2021년 8월 31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채수일	진상근	찬왕성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¹⁾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성과보수규정 개정 검토 및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가결

주1) 일신상의 사유

4) 평가

법령과 회사의 규정이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보수위원회가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적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정상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연간 활동내역을 기초로 그 구성과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주체와 방법, 절차, 지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당사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과반수를 구성하고 사외이사 중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효과적인 토의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의 안건자료는 사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등 당사의 보상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였고 적정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차원의 성과에 대하여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지표로 신계약가치, 세후영업이익, 보험계약소멸율 등이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개인차원의 성과에 대하여 회사차원의 성과지표와 연계된 개인별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개인별 보상은 기본적으로 회사차원의 성과와 개인별 핵심성과지표의 달성 성과를 연계하여 지급율을 결정하고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의 성과보수는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후 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경영진)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총 성과보수액의 60%를 차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이후 3년간 이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들은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에 성과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규정 제7조와 성과보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회사는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또는 손실 발생 등이 있는 경우 보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보수를 지급보류, 취소 또는 조정하거나 기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과 양도제한부주식 예상금액을 확정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 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경영진)의 전체 보상액 중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은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는 현금보수,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부주식으로 형태를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부주식으로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즉시지급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당해년도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의 60% 이하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과보수 총액의 40% 이상에 대해서는 3년간 이연지급을 실시하되, 동법 감독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 성과주의 기반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Performance Incentiv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상대 평가하여 결정된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직급자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급여 인상 시 직급별 급여 인상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들에게 외부전문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21년 중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A)임직원 보수총액 ^{주1)}	(B)법인세차감전순이익 ^{주2)}	(A/B)비율	(C)임직원수 ^{주3)}	(A/C)임직원 평균보수
전년도 (2020년)	641.1	1,060.6	0.6	661	0.97
당해년도 (2021년)	684.3	2,024.4	0.3	679	1.01

주1)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주2) t-1기의 금액을 기재(예시: 당해년도가 2021년인 경우 2020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재)

주3)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퇴사자와 인턴 등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수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억원)

구분		임원	관리자	사원등
전년도 (2020년)	보수총액	95.4	29.0	516.6
	성과보수액	14.1	3.5	61.1
당해년도	보수총액	68.4	73.6	542.3



(2021년)	성과보수액	12.2	12.1	90.8
---------	-------	------	------	------

※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미포함(이하 동일)

※ 지배구조법 취지에 맞게 임원관리기준이 제정되면서 2021년부터 임원의 범위가 기존 이사, 상무와 같은 호칭기준에서 경영위원회 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와 같이 실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직책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원의 수와 임원 보수에 산입해야 하는 대상액이 축소되었고 관리자수와 관리자 보수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함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고정보상액 ^{주2)}	변동보상액 ^{주2)}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20년)	임원	32	60.5	17.4	8.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1년)	임원	12	49.8	15.4	6.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서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기재(이하 동일) 했으며, 2021년부터 임원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임원의 수(수급자수)와 산입 대상액 축소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액'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액'으로 분류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변동보상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20년)	임원	17.4	3.5	14.0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임원	15.4	6.7	8.7		



(2021년)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	---	---	---	---	---

※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1)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과거 실제 지급율의 산술평균 등을 사용)을 사용하여 산정

주2)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하며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주1)}	지급확정 ^{주2)}	
			지급확정 ^{주2)}	지급미확정 ^{주2)}
전년도 (2020년)	임원	23.0	2.0	21.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1년)	임원	13.5	1.4	12.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액을 당해년도 1/4분기에 평가하여 확정하는 경우, 당해년도 이연보상액에 포함(이하 동일)

주1)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

주2) 작성일(2022년 2월 8일 현재)기준으로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0년)	임원	23.0	8.0	8.7	6.3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21년)	임원	13.5	3.9	4.2	5.3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 당해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지급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t기: 2022년에 지급하는 이연보상액)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 ^{주1)}	주가변동 반영 ^{주2)}	성과평가 등 반영 ^{주3)}	기타 환수금액
전년도 (2020년)	임원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1년)	임원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년도말 시점 이연보상액중에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을 기재하며,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액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기재.

주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6)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0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1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문서세부사항

Document Name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Document Version	5.0
Originating Business Function	법무지원본부
Policy Owner	조규환 과장
Primary Policy Contact Person	조규환 과장
Secondary Policy Contact Person	오혜미 대리
Date of First Issuance	2017 년 6 월 13 일
Date of Last Approval	2018 년 12 월 14 일
Version Effective Date	2018 년 12 월 14 일
Notified to	주주,이사회
Approved by	주주총회
Review Frequency	개정 필요 시
Next Review Date	개정 필요 시
Document Type	규정
<i>Per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i>	
Information Classification	Restricted
<i>Per Group Data Protection Standard</i>	
Related Policies and Standards	

VERSION CONTROL*

Version	Amendments	Approval Date	Approved by
1.0	제정	2017.06.13.	주주총회
2.0	제 9 조 (6)항 추가	2017.11.21.	주주총회
3.0	제 2 조,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29 조의 2, 제 30 조, 제 32 조, 제 34 조의 2 일부개정	2017.12.01.	주주총회
4.0	제 3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일부개정 및 양식변경	2018.03.21.	주주총회
5.0	제 30 조 (3)항 추가, 제 32 조 (1)항 수정	2018.12.14	주주총회

DISTRIBUTION LIST

TITLES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전 직원

* Represents mandatory component that must be included in all POLICIES and STANDARDS as per AIA Group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

Contents

제 1 장	총 칙	6
제 1 조	회사의 상호	6
제 2 조	목 적	6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6
제 4 조	광고방법	7
제 5 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7
제 2 장	주 식	7
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7
제 7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7
제 8 조	주식의 종류 및 1 주의 금액	8
제 9 조	신주발행	8
제 10 조	주권의 종류	10
제 11 조	주주명부	10
제 12 조	명의개서 및 질권등록	10
제 13 조	주권의 재발행	11
제 14 조	수 수 료	11
제 15 조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11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2
제 3 장	주 주 총 회	12
제 17 조	종류 및 소집시기	12
제 18 조	소 집	13
제 19 조	의 장	13
제 20 조	결의방법	13
제 21 조	의 결 권	14
제 22 조	속행 또는 연기	15
제 23 조	의 사 례	15

<u>제 4 장</u>	이사, 감사위원회 및 임원	15
제 24 조	이사의 수	16
제 25 조	선 임	16
제 26 조	임 기	16
제 27 조	대표이사 및 임원	16
제 28 조	감사위원회	17
제 29 조	보수 및 퇴직금	17
제 29 조의 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7
<u>제 5 장</u>	이 사 회	18
제 30 조	구성 및 권한	18
제 31 조	소 집	19
제 32 조	의 장	19
제 33 조	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20
제 34 조	이사회 의 의사를	20
제 34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20
<u>제 6 장</u>	회 계	21
제 35 조	영업연도	21
제 36 조	회계장부	21
제 37 조	재무제표	21
제 38 조	이익의 처분	22
제 39 조	이익의 배당	22
제 39 조의 2	중간배당	23
<u>제 7 장</u>	보 칙	23
제 40 조	규 정	23
제 41 조	상법의 적용	23
제 42 조	언 어	23
부 칙		24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회사의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AIA Life Insurance Co. Ltd.” (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영위 가능한 보험업
- (2)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자산운용
- (3)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사업
- (4) 기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
- (5) 부동산 임대업
- (6) 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 Represents mandatory component that must be included in all POLICIES and STANDARDS as per AIA Group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

- (1)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사 본점의 구체적인 주소 및 장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단, 최초의 본점 주소 및 장소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정한다.
-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치,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a.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국문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5 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법률 내지 본 정관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발송하는 모든 통지는 영문으로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로 한다.

제 7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3,400,000주로 한다. 1주당 발행가액

* Represents mandatory component that must be included in all POLICIES and STANDARDS as per AIA Group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

은 금 10,000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및 1주의 금액

-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액면가 금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 정관을 변경하여 액면주식을 기명식 무액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신주발행

- (1)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2)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나 신주 배정으로 인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배정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된다.
- (4) 외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행사기간은 당해 외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을 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 내지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수리 등을 마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
- (5)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전환 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직전 영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9조의 2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위 사유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
- (6) 위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제(2)항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
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또는 기술혁신, 생산성·성장 등에 기
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3)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
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
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
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6) 주식매수선택권은 위 제(1)항에 따른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행사할 수 있다.

-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기준, 행사,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9)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이사 또는 피용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하는 경우
 - 2. 당해 이사 또는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기명식으로 하며, 그 종류는 일(1)주권, 일십(10)주권, 일백(1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주권 및 일백만(1,000,000)주권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주주명부

회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다.

제 12 조 명의개서 및 질권등록

- (1) 주식을 양수한 자는 회사에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해 권리를 승계한 자는

주권을 제시함이 없이 포괄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2) 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이나 말소를 원하는 주주는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사 주식의 이전 또는 입질은 취득자 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 13 조 주권의 재발행

- (1)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또는 주권의 분할, 병합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 또는 질권자는 회사에 그 주권과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손이 심하여 주권의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경우, 그 주권은 제(2)항에 따라 상실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2) 주권을 상실한 주주는 그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과 회사에서 정하는 약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수 수 료

회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주권의 재발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조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 (1) 주주, 등록질권자 및 그 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는 그 해외주소로 통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가주소나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3)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을 회사에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4)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또는 신고된 서명이 있어야 한다.
- (5) 회사는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간주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종류 및 소집시기

- (1)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 집

-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소집 장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의 장소로 한다.
- (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통지(전자통신을 포함하며, 해당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수단의 통지로 대체할 수 있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회의 전에 회사의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가 그 회의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만장일치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회의의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다.

제 19 조 의 장

주주총회는 출석주주 또는 그들이 지정한 후보자나 대표자 중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주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한다.

제 20 조 결의방법

-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2) 다음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5. 회사 설립 후 2년 이내에 그 설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营业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의 체결
6. 이사의 해임
7.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8.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자본금의 감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에 의함)
10. 해산
11. 해산 후 회사의 계속
12.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13. 신설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설립위원의 선임
14. 주식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1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승인
16. 기타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경우

제 21 조 의결권

- (1)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4)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해당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속행 또는 연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회 또는 연기회가 14일 이내에 개최되는 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의사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영문 및 국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2) 의사록의 영문본과 국문본에 상이함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4 장 이사, 감사위원회 및 임원

제 24 조 이사의 수

- (1)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
- (2)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이사 수의 과반수로 한다.
-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선 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초대 이사는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26 조 임 기

- (1) 이사의 임기는 3년 내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단, 그 임기는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된다.
- (2)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는 3년 내로 하며, 연속하여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3)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시에 선임된 초대 이사의 임기는 제3차 영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에 만료한다.

제 27 조 대표이사 및 임원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 (2)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제한된다.

1.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 업무의 집행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경우
 3.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결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
- (3)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8 조 감사위원회

-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3)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법률상 규정된 권한 및 의무를 가지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문서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 (4)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영문 및 국문으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록의 영문본과 국문본에 상이함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 (5)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과 같은 상세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다.

제 29 조 보수 및 퇴직금

- (1) 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2) 이사 및 기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29 조의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1) 회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30 조 구성 및 권한

- (1)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 (2)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 (4)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그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다.

제 31 조 소 집

-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동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대한민국 내외의 어느 곳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회 이사 전원 및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경우 전화통화나 다른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개최될 수 있다.

제 32 조 의 장

- (1) 이사회는 매년 1인의 이사를 이사회 진행을 주재할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의장으로 인정되며 이후 회의에서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3)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4) 이사회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재하거나 출석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33 조 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법률 또는 본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 의사록

-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서는 영문 및 국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3) 의사록의 영문본과 국문본에 상이함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34 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 (1) 회사는 이사회 원만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위험관리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6 장 회 계

제 35 조 영업연도

- (1)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 회계장부

회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완전한 회계장부 1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제 37 조 재무제표

- (1)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2)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의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6)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익의 처분

회사는 매 영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 39 조 이익의 배당

- (1) 이익의 배당은 매 영업연도 종료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2) 회사는 배당금을 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결의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의2 중간배당

- (1) 회사는 매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3) 회사가 영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제(1)항에 규정된 날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을 자본 전입한 경우, 주식배당을 한 경우 포함), 중간배당에 관하여 당해 신주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7 장 보 칙

제 40 조 규 정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41 조 상법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 42 조 언 어

* Represents mandatory component that must be included in all POLICIES and STANDARDS as per AIA Group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

본 정관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채택된다. 본 정관의 영문본과 국문본은 모두 정본이나, 서로 상이함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Version [5.0]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사회규정 (Board Charter)



문서세부사항

Document Name	이사회규정 (Board Charter)
Document Version	3.0
Originating Business Function	법무자원본부
Policy Owner	조규환 과장
Primary Policy Contact Person	조규환 과장
Secondary Policy Contact Person	오혜미 대리
Date of First Issuance	2017 년 12 월 1 일
Date of Last Approval	2018 년 3 월 21 일
Version Effective Date	2018 년 3 월 21 일
Notified to	이사회
Approved by	이사회
Review Frequency	년 1 회
Next Review Date	매년
Document Type <i>Per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i>	규정
Information Classification <i>Per Group Data Protection Standard</i>	Restricted
Related Policies and Standards	

VERSION CONTROL*

Version	Amendments	Approval Date	Approved by
1.0	제정	2017.12.1.	이사회
2.0	제 2.5 조, 제 3.1 조 개정	2018.1.31.	이사회
3.0	제 5.1 조 개정	2018.3.21.	이사회

DISTRIBUTION LIST

TITLES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전 직원

* Represents mandatory component that must be included in all POLICIES and STANDARDS as per AIA Group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

Contents

1. 서론.....	5
2. 이사회 역할 및 책임	5
3. 이사회 의장의 역할과 책임.....	9
4.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11
5. 의결절차 및 방법.....	12
6. 검토.....	13

1. 서론

본 규정은 AIA Life Insurance Co. Ltd.(이하 “회사”)의 이사회(이하 각각 “이사”, 통칭하여 “이사들” 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이사회는 사업 계획 달성, 기업 의무와 법규 준수 등 회사의 지속적인 성과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회사는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AIA Group Limited(이하 “AIAGL”)의 간접 완전자회사이다. AIAGL 이사회는 AIAGL 및 자회사(이하 통칭하여 “AIA 그룹”)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지배구조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회사 이사회는 AIA 그룹의 목표와 전략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를 위하여 상기 책임을 부담하나 한편 회사의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중도 회사의 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이사회는 본 규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a) 상법, (b)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 규제, 법적 기준에 따른 요건을 숙지한다.

2. 이사의 역할 및 책임

2.1. 권한

이사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정관,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회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2.2. 이사의 역할

이사의 주요 역할은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 Represents mandatory component that must be included in all POLICIES and STANDARDS as per AIA Group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

이사회는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적절한 권고를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2.1. 전략 및 경영

- ① 기업 전략,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의 근거가 되는 회사의 장기 목표와 경영 전략의 결정
- ② 연간 영업 및 자본 지출 예산과 그에 따른 중요한 변경에 관한 승인
- ③ 회사의 전략, 목표, 사업 계획, 예산을 반영한 실적 검토 및 필요한 시정 조치 실행
- ④ 회사의 지배 및 책임 시스템의 감독
- ⑤ 회사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적절한 자원의 보장
- ⑥ 아래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의 보장
 - 현금 흐름 포지션 모니터링
 - 책임 준비금 실적 모니터링 및 준비금 정책에 관한 중요한 변경에 관한 승인
 - 투자 실적 모니터링 및 투자 방침에 관한 중요한 변경에 관한 승인
 - 지급능력 요건 및 자본 충실성 요건 모니터링

2.2. 구조 및 자본

- ① 아래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본구조의 중요한 변경
 - 감자
 - 주식 발행
 - 주식(자기주식 포함) 환매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사채 발행
 - 채무 구조의 중요한 변경

- ②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 ③ 기타 회사 기업 구조의 중요한 변경

2.3. 금융 보고 및 관리

- ① 연례 작성 보고서 및 연간 회계의 승인
- ② 회계 정책이나 실무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승인
- ③ 배당 관련 사항의 승인

2.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①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의 결정
- ② 그 외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5. 준법 감시

- ① 적절한 준법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정책 검토, 승인 및 그 실효성 모니터링
- ② 회사가 모든 법적·규제적 요건과 윤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③ 직원이 AIA 윤리 기준 및 행동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
- ④ 회사와 관련한 주요 소송 감독
- ⑤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정책 검토, 승인 및 그 실효성 모니터링

2.6. 계약

- ① 회사와 관련한 주요 자금 프로젝트, 투자, 인수, 처분의 감독
- ② 통상적인 업무과정의 일환 또는 그 밖의 경위에 의하여 회사가 체결한 전략적 또는 규모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승인

2.7. 이사회 구성원 등 임명

- ①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

- ②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각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면 승인
- ③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이사 후보 추천
- ④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승인
- ⑤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승인
- ⑥ 보험업법에 따라 정의된 선임계리사의 임면 승인

2.8. 보수

이사 및 제 11 항에 따라 설립된 보수위원회가 보수를 검토 · 승인하는 기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검토

2.9. 이사에 관한 사항

- ① 경업금지 관련 승인
- ②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관련 승인
- ③ 이사(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포함)와 회사 간의 거래 관련 승인

2.10.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① 정관 개정안의 검토 및 승인, 지배구조내부규정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및 내부 지침, 이사회규정, 제 11 항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기타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규정의 승인
- ②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의 이해 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2.11.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수립

- ② 이사회 내 위원회로부터 의사록 및/또는 보고서 수령
- ③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실적 평가
- ④ 특별한 안건의 심의나 의결에 필요한 경우 기타 특별 위원회의 수립

2.12. 기타 사항

- ① 직원을 위한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 보장
-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③ 이사회 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사회 의장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 의장은 회사 사업과 업무 및 경영 감독에 관한 책임에 따라 이사회를 이끄는 등 이사회 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 대표이사, 기타 고위 경영진 및 주주와 협업하여야 한다.

3.1.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1 인의 이사를 이사회 의장(이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 등으로 새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도 이와 동일하다.

3.2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본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직무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사회 의장은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 모든 이사가 이사회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적절히 보고 받도록 보장
- 이사가 적절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받도록 보장

-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이사회에 권고하는 전략, 사업 계획, 기타 정책 권고안이 이사회로부터 철저한 심의 및 평가를 받도록 보장
- 주주와 효과적인 의사 교환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보장
- 주주의 견해가 이사회 전체에 전달되도록 보장
- 합당한 지배구조 정책 및 절차가 이행되도록 보장
- 이사회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도록 보장
- 모든 이사가 완전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사회 업무에 기여하도록 장려
-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이행하고, 시의적절하게 주요 사안을 논의하도록 보장
- 고위 경영진의 감독에 있어 이사회를 지휘

3.3 제 1.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3.4 선임 사외이사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 ②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5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 사외이사가 제 1.4 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6 이사회 의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대행하거나 출석이사 중에서 임시 의장이 선임될 수 있다.

4.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4.1. 대표이사의 역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대하여 AIA 그룹 정책, 부여 받은 권한, 일상 보고 사항에 따라 모든 일상 업무 및 행정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수익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4.1.1. 전략 및 경영

- ①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예산, 회사 전략을 고안하여 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업 계획, 예산, 회사 전략을 이행
- ② 회사 지배 및 감시 시스템과 금융 및 기타 사항의 보고 방식이 모든 관련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방식을 관리
- ③ 적절한 경우 이사회 의장과 협업하여 회사의 외부 공시 정보 및 주주 정보의 전략 관리
- ④ 전사적 차원에서 규제관계 관리

4.1.2. 위험 관리

- ① 회사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운영상 위험의 확인 및 관리, 그러한 위험을 이사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전략 수립
- ②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 및 절차를 통지 및 이행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방안 실시
- ③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제공 받고 효과적인 내부 감사와 규제 준수 기능을 갖추도록 보장
- ④ 회사의 보험제도가 비용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고 부보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4.1.3. 의사 교환

이사회 및 각종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지배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 사업, 특히 회사 실적, 재정 상태, 운영 결과, 전망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4.1.4. 기타 사항

- ① 직원을 위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 ② 정관 기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원의 임면 및 성과 평가
- ③ 직원이 적절한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
- ④ 적절한 경우 다른 이사가 제의한 사항을 안건에 포함하여 각 이사회 안건 마련
- ⑤ 주주총회 소집

4.2. 권한의 위임

대표이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자신이 부여 받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의결절차 및 방법

5.1.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 방법 및 장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사외이사에게 늦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5.2. 결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모든 출석이사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한 결의 참가는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검토

이사회 의장은 본 규정을 해석 및/또는 설명하는 결정권자이다.

이사회는 본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운영 환경 속에서 필요한 요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검토한다.

본 규정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된다. 본 규정의 영문본 및 국문본은 모두 정본이나, 양자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사회 규정(Board Charter)]

Version [3.0]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Policy)



문서세부사항

Document Name	지배구조내부규범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Policy)
Document Version	3.0
Originating Business Function	법무지원본부
Policy Owner	조규환 과장
Primary Policy Contact Person	조규환 과장
Secondary Policy Contact Person	오혜미 대리
Date of First Issuance	2017 년 12 월 1 일
Date of Last Approval	2018 년 9 월 7 일
Version Effective Date	2018 년 9 월 7 일
Notified to	이사회
Approved by	이사회
Review Frequency	연 1 회
Next Review Date	매년
Document Type	규정
<i>Per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i>	
Information Classification	Restricted
<i>Per Group Data Protection Standard</i>	
Related Policies and Standards	

VERSION CONTROL*

Version	Amendments	Approval Date	Approved by
1.0	제정	2017.12.1.	이사회
2.0	제 4 조 제 1 항 변경	2018.1.31.	이사회
3.0	제 24 조 변경	218.9.7.	이사회

DISTRIBUTION LIST

TITLES
에이아이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전 직원

* Represents mandatory component that must be included in all POLICIES and STANDARDS as per AIA Group Corporate Policy Governance Standard

Contents

제 1 장 총 칙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정의)	6
제 2 장 이사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1 절 이사회와 구성현황	6
제 3 조 (이사회와 구성 및 선임)	6
제 4 조 (이사회 의장)	6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7
제 5 조 (이사의 자격요건)	7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8
제 6 조 (이사회와 결의 및 보고사항)	8
제 7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9
제 8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9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10
제 9 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10
제 10 조 (이사직의 퇴임의 기준 및 절차)	10
제 5 절 이사회와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11
제 11 조 (이사회와 소집절차)	11
제 12 조 (의결권 행사방법)	11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제 13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와 종류와 그 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	12
제 14 조 (위원회와 종류와 구성)	12
제 15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3
제 16 조 (감사위원회)	13
제 17 조 (위험관리위원회)	14
제 18 조 (보수위원회)	15
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6
제 19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6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16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16
제 20 조 (임원의 자격요건)	16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17
제 21 조 (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17
제 22 조 (감사위원회 위원과 권한과 준수사항)	17

제 23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18
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18
제 24 조 (임원의 선임)	18
제 25 조 (임원의 퇴임 등)	18
제 26 조 (승계 계획)	19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19
제 27 조 (임원에 대한 교육)	19
제 28 조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19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19
제 29 조 (임원 성과평가)	20
제 30 조 (임원의 보수)	20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20
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0
제 31 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
제 32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21
제 33 조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	22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22
제 34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22
제 3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22
제 35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자격검증 및 관리 방법)	22
제 4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22
제 36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23
제 5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23
제 37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23
부칙	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 14 조에 따라 AIA Life Insurance Co. Ltd. (이하 “회사”)가 주주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임원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임원 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경영 승계 등과 관련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 또는 “이 규범”)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된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 3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선임)

- ① 이사회는 이사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사외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가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1 인의 이사를 이사회 의장(이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 등으로 새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도 이와 동일하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거나 출석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의장을 선임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 3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5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이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으며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6 조 (이사회 결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10. 중요 계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 1, 2 항의 심의·의결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장된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이사가 본조 및 법령이나 정관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9 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1. 대표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3. 사외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3 년 이내로 한다.
 4.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6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외이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 10 조 (이사직의 퇴임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정관, 회사 규정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
- ② 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 11 조 (이사회 의 소집절차)

- ①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 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 과반수,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의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소집목적은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2 조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이사회 의결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대한민국 내외의 어느 곳에서도 개최될 수 있으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 ② 이사회는 제 1 항에 따라 심의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 재선임에 참고한다.
- ④ 위 평가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 14 조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선임함에 있어 그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후보가 지배구조법 기타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위원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내부 감사업무 담당부서 설치, 관리 등
7. 내부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9. 감사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0. 기타 관련 법령, 정관, 회사 규정에서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연 4 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기타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 17 조 (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허용한도의 설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 (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③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
2. 제 1 호의 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적정성 평가
3.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4.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관련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수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연간 활동내역을 기초로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제 1 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주체, 방법, 절차, 지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이사회는 평가결과 및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0 조 (임원의 자격요건)

- ① 본 장에서 “임원”이라 함은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라 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 ②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직을 잃는다.
- ③ 준법감시인은 제 2 항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외에 지배구조법 제 26 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직을 잃는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제 2 항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외에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직을 잃는다.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 21 조 (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제 8 조 제 7 항의 책임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 22 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준수사항)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감사를 목적으로 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부여한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담당 직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24 조 (임원의 선임)

- ① 사규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임기, 연임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임면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한다.

제 25 조 (임원의 퇴임 등)

- ① 정관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하며 제 4 호 및 제 5 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2. 사직원 제출

3. 회사 인사규정 상 당연퇴직 사유
 4. 회사 인사규정 상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되는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4 조 제 3 항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승계 계획)

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궐위 시 업무대행 및 승계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인재 검토를 통하여 승계 계획을 수립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업무대행 및 승계가 결정된 각 후보자는 개별 분석 및 역량 검토에 따라 전략적인 개별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 27 조 (임원에 대한 교육)

-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집합 또는 사이버 과정 등 필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 중 선발된 자에 한하여 외부위탁 파견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8 조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사내 또는 사외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29 조 (임원 성과평가)

- ①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이하 본 절에서 같다)에 대한 성과 평가는 년 1 회 실시하며, 해당 평가 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및 연임 결정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 ② 성과평가의 대상, 절차 및 기준, 성과급 등 보상의 체계 등은 임원의 직급과 담당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제 29 조의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의 보수 중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비율, 성과급 중 이연되는 비율 및 이연기간, 지급방식 등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 31 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또는 관련 내부규정(이하 "경영승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② 제 1 항의 경영승계 계획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최고경영자의 최소한의 자격요건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3.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4.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5.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6.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위 경영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 1 항의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 32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시될 수 있다.

1. 임기 만료
2. 중도 사임
3.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나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4. 형벌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사망,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유고 상황으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1 항의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이 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에 한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 33 조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

- ① 이사회는 이 규범 제 32 조 제 1 항의 경영승계 사유 중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갑작스런 최고경영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규범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34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①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 3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35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자격검증 및 관리 방법)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한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 36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5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37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임기는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정하며, 그 선임 및 퇴임 관련 사항은 제 9 조 및 제 10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규범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상의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따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시행일자 및 적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Policy)]

Version [3.0]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규정

(Terms of Reference for the Audit Committee)

소관부서: 내부감사실

Version: 2.0

시행일: 2018 년 12 월 11 일

사규 이력

사규 명칭	[P-2017-001] 감사위원회 규정 (Terms of Reference for the Audit Committee)
사규 버전	2.0
사규 소관부서	내부감사실
사규 소관부서 부서장	송우진
사규 소관부서 담당자	김기석
사규 제정일자	2017.12.1.
사규 최종 승인일자	2018.12.11.
사규 시행일자	2018.12.11.
사규 유형 (Per Standards for Corporate Policy Governance)	규정
사규 승인자	이사회
사규 검토 빈도	연 1 회 (관련 법규 등 개정 시 즉시)
향후 검토 일정	매년
문서 정보 등급 (Per AIA Group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Restricted
관련 법령 또는 사규(그룹, AIA 생명 포함)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내용	승인 일자	승인자	시행일자
1.0	제정	2017.12.1.	이사회	2017.12.1.
2.0	정의, 권한과 책임, 직무, 기타, 권한위임 조항의 개정	2018.12.11.	이사회	2018.12.11.

DISTRIBUTION LIST

TITLES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임직원

목 차

정의.....	5
설립.....	5
임명.....	5
회의 개최 횟수.....	7
회의 참석.....	7
회의의 진행.....	8
권한과 책임.....	8
직무.....	9
기타.....	11
권한위임.....	11
보고 및 행정.....	12

정의

본 규정의 목적상,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관이라 함은 회사의 정관을 의미한다.

감사위원회라 함은 본 규정 제 2 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된 감사위원회를 의미한다.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회사라 함은 AIA Life Insurance Co. Ltd.를 의미한다.

CEO 라 함은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의미한다.

CFO 라 함은 회사의 최고재무담당책임자를 의미한다.

그룹감사위원회라 함은 AIA Group Limited 의 이사회가 설립하고 AIA Group Limited 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상임이사(또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 고위경영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TOR 이라 함은 규정을 의미한다.

설립

1. 감사위원회는 본 규정과 함께 2017 년 12 월 1 일자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다.

임명

2.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주주총회가 임명을 승인하여 선임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가운데 최소 1인 이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둔다.

(a)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b)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를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c)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d)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f)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회사의 기존 감사법인의 전직 파트너는 다음 일자 중 늦게 도래하는 일자로부터 1년 동안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금지된다.

(a) 감사법인의 파트너직을 상실한 날

(b) 감사법인의 금융지분을 상실한 날

5.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명된 자가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직 최초 임명일자 순서에 따라, 최초 임명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서에 따라 위원장직 대행자가 된다.
7. 감사위원회 위원 수가 본 규정 제 2 조에 따른 최소 인원 미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후 개최되는 최초 주주 총회에서 선임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회의 개최 횟수

8. 감사위원회는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 년에 4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9.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회, 또는 회사 외부감사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소집한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모든 출석 위원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한 결의 참가는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의 참석

10.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최고재무담당책임자,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AIA 그룹 임원(들)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 회사의 내부감사팀 담당 임원(들), 회사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1.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영진 구성원 또는 달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와 별도로 회의를 할 수 있다.

회의의 진행

12. 회의는 감사위원회 회의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또는 감사위원이 달리 합의한 기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3. 감사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결의는 출석위원 또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정 회의 안건에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완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한다.

권한과 책임

15.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감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활동과 책임을 이행할 권한을 가지며, 회사 외부감사, 전체 사업 및 지원 등에 관련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7.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금융·회계 정보 및 보고 관행을 검토, 감시, 검사, 조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 회계장부, 서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18.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직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19. 감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문을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사지원을 위해 설립된 회사 내 별도 팀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는다.

20.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목적과 사유를 기재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1. 이사가 법률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를 위하여 그러한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22. 감사위원회는 이사(들)의 직무 이행에 관한 감사를 수행하고 이사(들)에게 회사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23. 회사(또는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직무

24. 감사위원회의 직무는 아래를 포함한다.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a) 외부감사인의 선정(재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의 요청
- (b)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문서화 및 준수 여부 확인
- (c) 외부감사인의 사임이나 해임에 관한 질의 검토
- (d)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 절차의 효율성 등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 마련, 감사인 선정기준 및 합의내용 이행여부 등 종합평가, 검토 및 모니터링
- (e) 감사 개시 전 외부감사인과 감사의 성격, 범위, 보고 의무에 관하여 협의, 1 개 이상의 감사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 상호 협조 확보
- (f) 회사의 회계 원칙 위반에 관한 보고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할 시, 외부 전문가가 회사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라 관련 사항을 해결하도록 회사에 요구

회사의 금융 및 회계 정보 검토

- (g) 최소 1 년에 1 회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효과에 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면)보고 수령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이에 관한 발견사항/의견 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 (h) 회사 재무제표, 연차보고서, 장부 및 기타 재무 보고서(해당 시)의 건전성 모니터링, 그러한 자료에 기재된 재무보고에 관한 중요한 판단 검토. 이러한 금융 정보를 검토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히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i) 회계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변경사항
 - (ii) 주요 판단 분야
 - (iii) 감사에 따른 중요한 조정사항
 - (iv) 계속기업의 가정 및 자격
 - (v) 회계기준 준수 여부
 - (vi) 재무 보고와 관련한 법적 요건 준수 여부
- (i) 상기 (h)와 관련하여
 - (i) 필요 시 이사회, 경영진, 그룹감사위원회와 연락
 - (ii) 감사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외부감사와 최소 1 년에 1 회 이상 회의
 - (iii) 해당 재무제표, 보고서, 장부에 반영되거나 반영될 필요가 있는 중요하고 특별한 항목 고려, 회계 및 재무보고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 준법감시인, 내부감사실이 제기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회사 재무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절차 감독

- (j) 회사 재무 통제 및 내부 통제 검토
- (k) 이사회가 위임하였거나 직접 실시한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항의 주요 조사 결과 및 경영진의

답변 고려

- (l) 회사의 내부감사실과 외부감사인 간 협조 보장, 내부감사실이 적절한 자원을 제공 받고 회사 내 적절한 입지를 갖도록 보장, 내부감사실의 효율성 검토 및 모니터링
- (m) 회사의 금융 및 회계 정책과 관행의 검토
- (n)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회계기록, 금융계정, 또는 통제 시스템에 관하여 감사가 경영진에 제기한 중요한 질의사항, 경영진의 답변 검토
- (o)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시의적절하게 답변을 제공하도록 지원
- (p)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

기타

- (q)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승인의 이유에 대한 문서 작성 및 관리
- (r) 이사가 법률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
- (s) 기타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는 직무
- (t) 기타 이사회가 정한 사항의 고려

권한위임

25.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내부감사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a)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내부감사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b)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 (c)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d) 감사위원회 의결로 위임한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6.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보고 및 행정

27. 감사위원회 의사록은 회사 법률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 비치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이사가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8. 감사위원회 의사록에는 위원이 제기한 우려사항이나 반대 의견 등 감사위원회가 고려한 사항 및 결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한 감사위원회 의사록 초안은 회의 종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통지되어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록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서명 및 기명날인한다. 영문본과 국문본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29. 본 규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률상 달리 제약을 받지 않는 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이를 숙지하도록 한다. 감사위원회가 각 회의 시 그룹감사위원회에 상정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발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직접 또는 내부감사실을 통하여 그러한 안건을 그룹감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AIA Korea

Risk Committee – Terms of Reference (K)

Incorporating

All Entities

세부 사항*

사규 명칭	Risk Committee – Terms of Reference (K)
사규 버전	2.0
사규 소관부서	리스크 관리팀
사규 소관부서 소유자	위험관리책임자
사규 소관부서 담당자(정)	이 인석
사규 소관부서 담당자(부)	이 진욱
사규 제정일자	2017-12-01
사규 최종 승인일자	2021-09-08
사규 시행일자	2021-09-08
사규 사전승인자	경영 위원회
사규 승인자	이사회
사규 검토 빈도	2 년에 1 번(or 관련 법규 등 개정 시 즉시)
향후 검토 일정	2023-09-08
사규 유형	규정(Policy)
문서 정보 등급	Restricted
관련 법령 또는 사규	

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내용	승인 일자	승인자	시행일자
1.0	신규 제정	2017-12-01	이사회	2017-12-01
2.0	사규 관리 기준에 따른 양식 변경 및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직무에 대체 투자 검토 및 승인 추가	2021-09-08	이사회	2021-09-08

DISTRIBUTION LIST

TITLES

Contents

1. 위험관리위원회의 목적.....	4
2. 회의 개최 횟수.....	4
3. 임명	4
4. 회의 참석	5
5. 회의의 진행.....	5
6. 권한	5
7. 직무	6
8. 보고 및 행정	7
9. 정의	7

1. 위험관리위원회의 목적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건전성을 감독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감독하고, 위험관리측정 시스템 및 기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관련 사안에 관하여 또는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 이사회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2. 회의 개최 횟수

- 1) 위험관리위원회는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 년에 4 회 회의를 개최한다.
- 2)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위험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모든 출석 위원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한 결의 참가는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임명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사회가 이사들 중에서 수시로 선임하고,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2)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명된 자가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단, 위험관리위원회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직 최초 임명일자 순서에 따라, 최초 임명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서에 따라 위원장직 대행자가 된다.

4. 회의 참석

- 1)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 구성원 중 누구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2)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에 속한 자 또는 달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와 별도로 회의를 할 수 있다.

5. 회의의 진행

- 1) 회의는 위험관리위원회 회의 예정일로부터 최소 1 주일 전(또는 위험관리위원이 달리 합의한 기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위험관리위원회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험관리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결의는 출석위원 또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정 회의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의결권은 정족수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 3) 경영진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완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한다.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이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추가로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각 위원은 경영진에 대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접근권을 갖는다.

6. 권한

- 1) 위험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기재된 활동을 조사하도록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모든 직원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위험관리위원회는 외부전문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는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자문가의 선정 기준 수립, 선정, 선임 및 규정 수립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직무

위험관리위원회의 직무는 아래를 포함한다.

- 1) 위험관리 전략 등 회사의 위험선호도와 위험관리기준의 심의 및 의결
- 2) 회사 내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하기 위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위험측정시스템과 기준의 심의 및 의결, 그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여부의 감독
- 3)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회사의 위험관리 및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위험관리 자원, 시스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보장
- 4) 회사의 위험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나 이사회 이사가 제안한 사항 및 위험측정 결과 검토
- 5) 회사 운영환경, 사업전략, 운영상의 중요한 변경과 관련한 위험 검토
- 6) 최소 6 개월에 1 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검토 및 승인, 회사의 자본관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의 심의 및 의결
- 7)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검토 및 승인
- 8) 회사의 위험선호도 등 투자관리,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등 각종 준비금 기준과 관련하여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 검토 및 승인
- 9) 이사회에 중요한 위험관리 사항 보고

10) 기타 회사에 적용되는 한도 및 통제 사항의 검토 및 승인

11)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체투자자산에 대하여 상품별 투자금액 3000 억원 이상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단, 개별 투자 건에 대한 승인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의결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보고 및 행정

- 1)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은 회사 법률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 비치하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이사가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에는 위원이 제기한 우려사항이나 반대 의견 등 위험관리위원회가 고려한 사항 및 결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초안은 회의 종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통지되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문본과 국문본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 3) 본 규정에 명시된 위험관리위원회의 일반적인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률상 달리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이를 숙지하도록 한다

9. 정의

본 규정의 목적상,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 2) 회사라 함은 AIA Life Insurance Co. Ltd.를 의미한다.
- 3) 이사라 함은 이사회 소속 이사를 의미한다.

- 4) 경영진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 고위경영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 5) 위험선호도라 함은 명시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결과의 가변성을 의미한다.
- 6) 위험관리위원회라 함은 본 규정 제 2 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설립된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 7) 위험관리기준이라 함은 위험선호도에 부합하는 위험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 8) 위험관리 측정 시스템 및 기준이라 함은 회사의 위험선호도에 비추어 회사 내 위험 수준 측정 및 배분의 기준으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측정기준, 접근법, 정량적 기법, 비율,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의미한다.
- 9) 위험관리정책이라 함은 위험관리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AIA Life Insurance Co. Ltd.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AIA의 기밀 및 전유 정보

작성자: AIA Life Insurance Co. Ltd. 이사회

일자: 2017년 12월 1일

버전: 1.0

정의

1. 본 규정의 목적상,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라 함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된 감사위원회를 의미한다.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회사라 함은 AIA Life Insurance Co. Ltd.를 의미한다.

이사라 함은 이사회 소속 이사를 의미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함은 본 규정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의미한다.

주주라 함은 회사의 주주를 의미한다.

TOR이라 함은 규정을 의미한다.

설립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규정과 함께 2017년 12월 1일자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다.

임명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사회가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고,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명된 자가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직 최초 임명일자 순서에 따라, 최초 임명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서에 따라 위원장직 대행자가 된다.

회의

6. 회의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모든 출석 위원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한 결의 참가는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7. 회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이 달리 합의한 기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결의는 출석위원 또는 전화회의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통해 의결되도록 한다. 위원 본인이 임원후보추천 대상이 되는 등 특정 회의 안전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한

9.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규정에 기재된 범위 내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았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조사와 관련하여 어느 직원에 대하여도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모든 직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 받는다.

10.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전문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제공 받는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자문가의 선정 기준 수립, 선정, 선임 및 규정 수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직무

11.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는 아래를 포함한다.

- (a)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기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검토 및 추천

보고 및 행정

1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은 회사 법률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 비치하며, 이사가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에는 위원이 제기한 우려사항이나 반대 의견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고려한 사항 및 결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초안은 회의 종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통지되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문본과 국문본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14. 본 규정에 명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일반적인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률상 달리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이를 숙지하도록 한다.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수위원회 규정

(Terms of Reference for the Remuneration Committee)

소관부서: 법무지원본부

Version: 2.0

시행일: 2018 년 12 월 11 일

사규 이력

사규 명칭	[P-2018-001] 보수위원회 규정 (Terms of Reference for the Remuneration Committee)
사규 버전	2.0
사규 소관부서	법무지원본부
사규 소관부서 부서장	법무지원본부장
사규 소관부서 담당자	법무지원본부 담당자
사규 제정일자	2017.12.1.
사규 최종 승인일자	2018.12.11.
사규 시행일자	2018.12.11.
사규 유형 (Per Standards for Corporate Policy Governance)	규정
사규 승인자	이사회
사규 검토 빈도	연 1회
향후 검토 일정	매년
문서 정보 등급 (Per AIA Group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Restricted
관련 법령 또는 사규(그룹, AIA생명 포함)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내용	승인 일자	승인자	시행일자
1.0	제정	2017.12.1.	이사회	2017.12.1.
2.0	정의, 권한, 직무 조항 개정	2018.12.11	이사회	2018.12.11

DISTRIBUTION LIST

TITLES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임직원

정의

1. 본 규정의 목적상,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회사라 함은 AIA Life Insurance Co. Ltd.를 의미한다.

이사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이사를 의미한다.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이라 함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증권 및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보수위원회라 함은 본 규정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설립된 보수위원회를 의미한다.

주주라 함은 회사의 주주를 의미한다.

TOR이라 함은 규정을 의미한다.

2. 본 규정에서 “**보수**”라 함은 급여, 상여금, 수당, 혜택(현금이나 현물), 연금, 환급액, 보상금(보직 상실이나 해임 또는 전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 포함), 인센티브 지급액(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 관련 제도 포함) 등을 의미한다.

설립

3. 보수위원회의 수립은 그 규정과 함께 2017년 12월 1일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되었다.

임명

4. 보수위원회 위원들은 이사회가 이사들 중에서 수시로 선임하고,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수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명된 자가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단, 보수위원회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직 최초 임명일자 순서에 따라, 최초 임명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서에 따라 위원장직 대행자가 된다.

6. 보수위원회 각 위원은 아래 기재된 사항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수위원회에 공개한다.

(a) 보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에 대한 개인의 재무적 이해관계(주주로서의 이해관계 제외)

(b) 타 법인의 이사직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

특별한 이해가 존재하는 위원은 보수위원회 결의에서 제외하며 그러한 결의와 관련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사임한다.

회의

7. 회의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된다. 보수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수위원회를 소집한다. 보수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보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모든 출석 위원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한 결의 참가는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8.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구성원 중 누구든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회의는 보수위원회 회의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또는 보수위원이 달리 합의한 기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수위원회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0. 보수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결의는 출석위원 또는 전화회의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정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한

11. 보수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12. 보수위원회는 외부전문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보수위원회는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 받는다.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보수 자문가의 선정 기준 수립, 선정, 선임 및 규정 수립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직무

13. 보수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제외. 이하 동조에서 같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a)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그 지정

(b)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

(c)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d)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관련 법령 및 AIA 그룹 내 관련 정책에 부합 여부 포함)등에 관한 사항

(e)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f)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보고 및 행정

14. 보수위원회 의사록은 회사 법무지원실에 비치하며, 이사가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보수위원회 의사록에는 위원이 제기한 우려사항이나 반대 의견 등 보수위원회가 고려한 사항 및 결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5. 그러한 보수위원회 의사록 초안은 회의 종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통지되어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문본과 국문본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

으로 한다.

14. 본 규정에 명시된 보수위원회의 일반적인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률상 달리 제약을 받지 않는 한, 보수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이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